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5. 4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12월 19일, 서천호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: 2024년 12월 2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23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5.3.5.) 상정, 제안설명,

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원회부

제424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(2025.4.16.) 상정, 축조심사,

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5.4.18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

찬반토론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서천호의원)

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예산·인력 등 자원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예산·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우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3.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임명현)

개정안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 및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·예산 등의 자원이 충분히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고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2항¹⁾ 및 「국가첨단전략산

1)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,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“중견기업시책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예산·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.

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제2항²⁾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 폐기

(생 략)

- 2)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(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)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(이하 “기술개발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1. 전략산업등 분야의 연구개발사업
 2.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·분석
 3. 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
 4.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에 따른 민·군기술협력사업
 5.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(생 략)